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1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이수진·정태호·송옥주

김정호 • 박홍배 • 최기상

송재봉 • 민형배 • 박선원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마약류"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u>.</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9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	
품·화장품· <u>의료기기</u> ·위생	의료기기·마약류-
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	
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	
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 ~ 6. (생략)

8. ~ 50. (생략)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생용품 관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지방공무원(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에 한한다) 10. ~ 53.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식품</u>•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8. ~ 50. (현행과 같음)